

나) 인사위원회 심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임용희망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이를 인사위원회에 교사 임용 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정함

- 교사로서 정신·신체상의 건강상태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기타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다) 임용권자가 원로교사로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제2항)

라) 원로교사의 우대사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제2항)

4) 교장임기 중의 전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장·원장임기 중에도 다른 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나 이 경우 전보된 학교에서는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근무 가능

5) 교장의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 및 공모교장 임용

가) 교장임기 중에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임용 예정부서를 사전에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함

※ 교장임기 중에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될 경우에는 교장의 임용 기간이 자동적으로 소멸됨

나) 교장임기 중에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이전의 교장 임용 기간은 자동으로 소멸됨

## 5 전보 · 전직

### 가. 시 · 군간 전보

1) 관련 규정

가) 인사교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도서·벽지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